

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45호 99. 9. 11)

총 무 위 원 회
1999. 10. 12

1. 심사경과

- 가. 1999. 9. 11 사천시장 제출
- 나. 1999. 9. 13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1999. 9. 15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(의결보류)
- 라. 1999. 10. 11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재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최학림)

가. 제안이유

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·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·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
- (2)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
- (3)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고려사항
- (4)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
- (5)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
- (6)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적·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할 것임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결의 및 답변요
지로 같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